

技術用役關連法令 및 業務改善에 關한 小見

姜 泰 旭 ※

<東邦技術公社會長>

1. 序 言

우리 나라 技術用役의 成長은 主로 建設部門에서의 業務發注로 先導되어 왔으며, 이때는 建設部等에서 臨時的 管理規定을 制定하여 技術用役業을 管理하였다.

그리고, 技術士法(1963年 11月 11日 法律 第1442號)와 技術用役育成法(1973年 2月 5日 法律第2474號) 및 同施行令(1973年 9月 7日 第6845號)가 發布됨으로써, 우리 나라 技術用役業도 本軌道에 오르기 始作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法의 公布만으로, 이의 業務가 萬全하게 되는 例는 極히 稀少하다.

이를 施行에 關係하는 主管廳 發注者 受注者 및 擔當 業務從事者들이 이의 關連法令 및 業務改善에 深奧한 研究努力을 傾注함으로써 모두 向上된 품이 마련된다고 하겠다.

本文은 이에 關한 小見을 提示하여 조금이나마 여기에 寄與코자 하는 바이다.

2. 技術用役業務의 專門性 提高를 為한 法規整備 및 施行

기술用役業務의 生命은 그의 專門性이 提高됨에 있다함은 異議가 없을 것이다. 이를 為한 具體的 法規整備에 關한 小見을 몇 가지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第10條(업무범위)에서 「① 용역업자는 등록된 당해 기술용역 부문 또는 전문분야에 한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그 技術部門에는 多岐多樣한

※ 國土開發技術士(地域 및 都市計劃)

專門分野(技術士單位)를 包含하는데도 不拘하고 部門構成에 漏落된 專門分野까지도 用役業務를遂行할 수 있게 함으로서 技用術役의 生命인 專門性의 缺如를 招來하였음.

따라서 綜合技術用役業者나 專門技術用役業者를 莫論하고, 用役業者는 登錄된 專門分野(技術士單位)에 限하여 用役業을遂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만, 1個 用役業務契約의 内容이 2個 以上的 技術用役分野에 걸쳐 있는 경우에 元來는 主된 技術分野는 勿論 從된 分野까지도 當該技術分野(技術士單位)를 保有하는 用役業者에 用役業務契約을 締結遂行시키는 것이 妥當하나 用役業者의 負擔을 當分間 減免시키는 뜻에서相當期間을 두고, 主된 技術用役分野를 包含하여 登錄한 專門 技術用役業者가 契約을 締結 業務를遂行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도 過渡의 方策이 될 것이다.

(나) 現今各地方行政機關에서 無資格技術者를 契約公務員으로 하여 前記技術用役育成法에 掲記한 基準未達되는 用役業體와 類似한 團體를組織하여 用役業務를 代行시키고 있는 實情인 바, 이는 官營, 國營, 民營을 莫論하고, 衡平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團體는 登錄된 民間業者와 同一한 技術人員(technician其他)其他를 確保하여 用役業務를遂行함으로서 技術業務의 專門性을維持하여야 할 것이고, 不然이면 即刻 그의 業務를 中止하도록 措置를 取하여야 함.

無資格技術者는 法의으로 技術能力을 評價할 수 없으니 따라서 業務責任을 追窮할 根據가 없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臥牛「아파트」의 到壞는 建築設計에對하여 無資格한 公務員이 設計하였기 때문이다.

醫學者도 醫師의 國家免許가 없으면 醫療를 擔當할 수 없는 것과 同一하게 어떠한 學位를 갖인者라 할지라도 技術資格을 가진者만이 實務의이고 經驗을 必要로 하고 있는 技術(用役)業務에 參與하여야 한다는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을 것이다.

以上. 趣旨를 具現시키기 為하여는 制裁의 法規가 制定되어야 할 것이다.

(다) 本項의 趣旨에 따라 過渡的으로 認定하고 있는 「認定技術士」는 前記한 바와 같이 技術能力評價面에서나 專門性 提高를 위하여서나 不合當하다는 것은勿論이다. 이에 關하여는 既히 本「技術士」誌(第8卷 4號)에 金京宇氏가 詳論하였음으로 여기서는 舉論하지 않기로 함.

(라) 技術士試驗에 있어서 應試者가 履修學校에서 當該專門技術分野의 關連있는 基礎的技術科目을 履修하였거나, 技術士豫備試驗科目에 必히, 이 技術科目을 넣어, 이 科目에 合格한 者만이 技術士本試驗에 應試할 수 있게 하여, 技術士資格者가 必히 技術素養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技術(用役)業務의 專門性 責任性 을 提高시키기 為한 方案

前述한 바 技術業務의 專門性, 責任性을 追求할 수 있는 具體的 事務的 要式를 制定함으로서 그의 成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인바, 이의 方案을 몇 가지 提示하여 본다.

(가)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 第11條에는 「용역계약서 및 보고서에 擔當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專門分野가 아닌 技術士로서 當該用役業務를 擔當하게 하여 그 技術士가 署名捺印하게 하는 境遇가 發生하여 技術用役의 專門性의 阻害되는 事例가 發生하고 있음.

따라서 用役契約書 및 報告書에는 그 業務에 合致되는 當該專門分野의 技術士가 署名捺印하게 하고, 더욱 二個以上의 專門分野(技術士單位)에 걸친 技術用役業務인 境遇에는, 各其當該專門技術分野를 區分 明示하여 各其分野技術士가 連署하도록 함이 責任所在와 專門性을 提高시키는 效果를 얻게 될 것임.

(나) 用役業務契約書, 및 報告書에, 技術士의 署名 뿐만 아니라, 當該發注技術用役의 現場說明에도 技術士參加(既히 1974. 4. 20 科技處관리 342로 示達된 바 있음) 設計圖書, 工程報告, 執工金(中間拂同様) 諸求書, 其他 技術檢討書나 設計書가 添加되는 民願書類等一切의 技術業務圖書에는 技術士署名捺印을 하게 함으로서 業務內容을 보다 誠實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前述한 바 技術(用役)業務圖書에의 主 및 從屬 技術士의 署名捺印과 同時에, 그의 作成過程에 參加한 調查 試驗, 製圖, 計算, 測量等 補助的 人員들도 그들의 所管擔當業務를 區分 明示하여서 이에 連署捺印케 하여 責任所在를 明確히하고 技術提高를 期할 수 있게 이를 義務化하는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技術士의 署名捺印에 使用하는 印章은 從來에는 私印을 使用하였으나, 그의 權威를 向上시키고 使用에 便利하도록 技術士의 印章은 統一된 規格의 印章을 登錄케 하고 이 登錄된 印章만을 使用하게 함이 可할 것이다.

그리고 이 登錄된 印章에는 技術分野, 技術士姓名, 技術士 登錄番號, 住民登錄番號, 日字等을 收錄하면 좋을 것이다.

4. 技術用役業의 振作을 為한 施策

이를 為하여 現行法의 改正案(閣議通過)에 反映된 바도 있으나 몇 가지 振作施策에 關하여 意見을 提示하여 본다.

(가) 外資導入事業에 對한 技術檢討(妥當性其他)는 例外없이 必히 國內技術士가 違行하도록 하여야 함. 이는 마치 企業公開에 앞서 公認會計士가 그 企業의 監查를 거쳐야 하는 것과 同一하다 하겠다.

이는 自國의 人的, 物的資源 其他與件을 他國人보다 自國人(技術士)이 更욱 邁切하게 知得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의 資源活動과 自國事情에 맞는 判断을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技術用役業의 育成에 早急한 나머지, 近

間法制定에서나 行政的措置로서 特定業者를 庇護하는 것은 育成을 為하여 百害無益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自由競爭을 通한 창달을 圖謀하며自主的인 業者の 成長과 統合으로 大型화와 堅實化를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러한 庇護를 얻어서 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安易한 姿勢를 가지는 것 自體가 그의 業體發展을 為하여서도 利潤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大多數當事者の 見解일 것이다.

(라) 畜產을 嘉獎하기 為하여 稅制 金融等 強한 支援策을 펴면서, 또한 技術人力의 培養과 技術用役業의 振作은 經濟發展의 基礎를 이룬다는 것은 萬人이 認定하고 있으나 實際面에 있어서는 이에 對하여 何等의 稅制上으로나 金融面上으로나 支援策이 없다는 것은 奇異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로서 既存 技術用役業體의 經營이 惡化되고, 이에 所屬되어 있으면서 該方面의 技術을 練磨한 優秀한 技術頭腦가 溫存發展되지 못하고, 待遇가 良好한 他種業體(建設業)에 移動하여 國

家的인 損失을 招來하고 있다 하겠다.

最近當局에서 技術用役人材確保의 必要를 痛感하여 科學院에 專擔養成機關을 設置하여 充當코자 하고 있다 한다. 이도 勿論必要하나. 이보다 앞서 現存 技術用役業體에 所屬된 技術人力을 溫存發展시키는 것이 火急하고도 能率의이라는 것을 看過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또한 上과 같은 技術用役業體나 技術人材에 對한 稅制上 金融上의 支援策도 必要하지마는 이들에 對한 報酬가 引上策定 되여야 함은 勿論이다.

4. 結 言

무릇 어찌한 國家的施策도 一朝 一夕에 完璧을 期하기는 힘든 것이며, 技術用役業의 育成이나, 技術人力의 資質과 量的 向上을 為하여서는當局者, 關係業務機關 및 該當技術者들이 業務等에 不斷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技 術 相 談 室 案 內

韓國技術士會는 機械·金屬·化工·電氣·電子·通信·造船·航空·土木·建築·纖維·鑄業·情報處理·國土開發·生產管理·產業應用의 16個分野 571名(1回~13回)의 技術士로 構成, 技術士法 및 國家技術資格法에 依據하여 設立된 政府의 認可團體입니다.
기술士란?

國家考試에 合格하여 認定을 받은 科學技術界의 專門的인 知識과 應用能力을 가진 技術의 權威이며 科學技術全分野에 對한 相談·指導等에 關與하고 있습니다.

本誌는 讀者 諸位와 좀더 가까운 訊이 되고자 하여 여러분의 「技術相談室」을 마련하였습니다. 讀者께서 平素 技術的인 點에 對해 簡單히 問議하실 것이 있으시면, 本 相談室을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到着된 相談文은 內容에 따라 專門分野의 技術士에게 依賴하여 誠意있는 答을 드리겠습니다.

◇ 相談要領 ◇

問 議 書: 200字 原稿紙 3枚 程度

相談方法: 問議書의 解答은 本人에게 郵送通知하고, 本誌에 掲載可能한 것은 次刊號에 掲載함.

相 談 料: 無料

보내실 곳: 서울特別市 中區 明洞 2街 2-7 電話(776) 1265 · 1866

韓國技術士會 事務局